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공고명 : 부천대학교 예지관 승강기 교체 공사



2021. 07. 19.

부천대학교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가. 사업명 : 부천대학교 예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 나. 사업위치 : 부천대학교 부천캠퍼스 예지관
- 다. 사업기간 :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승강기제작 및 시운전 기간 포함

2. 공고 참가 자격

- 가.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에 의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업체
 - 2) 법인으로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내에 있는 업체
 - 3)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
 - 4)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총 3,000대 이상의 승강기 교체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승강기 설치 확인서-교체 설치 제출)
- 나.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1)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우리대학교에 지체상금을 납부 사실이 있는 업체
 - 2)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공고일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현장설명(개별 현장방문으로 생략)

- 가. 우리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설명회를 개최 하지 않고, 현장방문은 2021년 7월 20일(화)부터 7월22일(목)까지 가능하며, 공고일 등록 전 담당부서(032-610-0645)연락 후 현장방문 및 실측을 진행해야 함.
- 나. 이를 현장설명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과업 내용은 공고일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낙찰자는 견적 누락 된 부분이나 물량 증가에 대해서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할 수 없으니, 견적 제출 전 현장 방문으로 견적 검토 필수

4. 견적서 제출 방법

- 가. 제출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15시까지(시간 엄수)
- 나.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ebiz4u.co.kr)을 통한 참가신청



5. 제출서류

- 가. 견적서(내역서 포함) 1부.
 - 나. 공사업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 마. 실적증명서 사본(협회증빙자료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원본대조필) 1부.
- ※ 허위·위조 사실 발견 시 차순위 업체 계약

6. 견적의 무효

- 가.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규정 제33조에 의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제출 등

7. 낙찰자 결정

- 가. 총액 견적방식으로 복수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15개의 예비가격 중(미공개 기초금액의 ±3% 범위) 투찰 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업체당 4개 추첨)
- 나.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 시 재공고
- 다.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
*낙찰자는 계약시 견적서 검토/협의(공사내역 추가 등)를 통해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의 견적제출은 내역서(산출포함)를 포함한 총액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 나. 본 사업에 대한 견적서는 현장방문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견적자는 본 사업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의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다.
※모든 자재는 KS규격에 맞는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공시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 라. 제출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물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견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032-610-0645)으로 문의 요함.

첨부서식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

2021. 07. 19.

부 천 대 학 교 총 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고일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공고일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공고일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공고일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고일에 공고일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공고일에 있어서 공고일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공고일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고일에 공고일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천대학교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공고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고일,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공고일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고일에 공고일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공고일 및 계약조건이 공고일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고일에 공고일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고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부천대학교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